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 등 절차 개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입니다. 해당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함
-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자가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함

II. 주요 내용

1. 자동화 방식 도입(제29조의2)

-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정함
- 수입식품등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인 경우에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하고, 수입신고가 적합한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발급

현 행	개 정
<p><신 설></p>	<p>제29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p> <p>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신고의 대상은 수입식품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식품등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수입식품등 2.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3.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른 서류검사의 대상 중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 4. 별표 9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p>②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이 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신고확인증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발급해야 한다.</p> <p>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자동화된 방식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해야 한다.</p> <p>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의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신고의 자동화된 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p>
<p>제30조(수입식품등의 검사 등)</p> <p>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p>	<p>제30조(수입식품등의 검사 등)</p> <p>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수입식품등이 제2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해야 한다.</p>
<p>제33조(검사결과 등의 공개)</p> <p>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p> <p>3.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적합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정보. 이 경우 그 공개기간은 해당 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소비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p>	<p>제33조(검사결과 등의 공개)</p> <p>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p> <p>3. 제29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적합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정보. 이 경우 그 공개기간은 해당 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소비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p>
<p>제49조의2(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p> <p>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p>	<p>제49조의2(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p> <p>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p>

2. 사무소 기준 완화(별표 7)

-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자가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

[별표 7]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현행	개정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III. 시행 일자

- 이 규칙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I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총리령 제1896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붙임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제01896호)
- [붙임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개정문개정이유)
- [붙임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 [별표7]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I Contact



박영기 관세사

T 070-4353-1531
E ykpark@esein.co.kr



이지은 관세사

T 02-6011-3092
E jelee1@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